

승강기산업 진통법안 (김용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57
----------	-------

발의연월일 : 2023. 4. 19.

발의자 : 김용판 · 서범수 · 강대식

이채익 · 박덕흠 · 김성원

강기윤 · 하영제 · 서일준

김선교 · 박성민 · 전봉민

홍석준 의원(13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1910년 최초 승강기 설치 후 112년만에 세계 7위의 승강기 보유국(80만 대)이자 세계에서 3번째로 매년 많은 승강기가 새롭게 설치(4만여 대)되는 시장 규모 4조원의 승강기 산업 대국에 해당됨.

그러나,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개정(2019. 3.)을 통한 안전중심의 정책 추진으로 이용자 안전은 크게 제고되었지만,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 및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승강기 관련 사업체의 대부분이 소규모 중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었고 국내 승강기 시장 구조는 약 60% 이상이 외국 기업과 수입 제품에 의존하여 설치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의 안전관리 중심의 법령만으로는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규제적 측면만이 부각되

어 승강기 관련 사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제조·설치·유지관리로 다변화되어 있는 국내 승강기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승강기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 및 수출 지향적 구조로의 전환을 통해 국내 승강기 업계의 자생력 제고를 위한 승강기산업 진흥법안이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됨.

이에, 승강기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진흥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실태조사, 정보시스템 구축, 산업발전협의체 운영 등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개발 지원, 해외진출 지원 및 진흥활동 추진 등 국내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지원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세계화를 위한 산업진흥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종국적으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안전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

해 해마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7조).

라.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8조).

마.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기금조성, 실용화 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사.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전시회 개최, 참여 지원, 공모전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아.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조사·연구, 국제교류, 국제학술대회, 국제박람회 및 해외진출 마케팅, 협력회의 등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1조).

자.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차.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음(안 제13조).

카.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안 제14조).

타.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며, 정부에 건의와 자문을 할 수 있음(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파.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설치·운영함(안 제18조).

하.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제15조에 따른 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19조).

승강기산업 진흥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승강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승강기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승강기를 말한다.
2. “승강기산업”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5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산업을 포함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 부품을 개발·제조·생산·유통·설치·유지관리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승강기사업자”란 승강기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승강기산업 지원 및 육성·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승강기산업의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승강기산업의 제조·설치·유지관리 부문별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3. 기술 연구개발의 촉진에 관한 사항
4.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5. 승강기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승강기산업의 구조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방안
7. 승강기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
8.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워야 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해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승강기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 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

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협조)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관련 단체·기관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제8조(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의 구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산업 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체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사업자의 제조·설치·수출·수입 등 실적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의 유지관리 실적에 관한 사항
4. 국내외 승강기산업의 입찰정보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6. 승강기산업 전문인력 양성·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보제공에 필요한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를 포함한다)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연구·개발 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수준의 조사 및 기술의 연구·개발
2. 연구·개발 지원 기금의 조성
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 조치

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5. 그 밖에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승강기 산업 관련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승강기사업자 등 관련 기업의 기술 개발비로 충당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승강기산업의 진흥활동) 정부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고 우수한 승강기 사업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우수 상품 및 서비스의 국내 전시회 개최 및 참여 지원 사업
2. 승강기산업 관련 공모전 또는 작품전의 개최
3. 그 밖에 승강기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행사의 개최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내 승강기 사업자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국제학술대회·국제박람회 등의 개최 및 참여 지원
 4. 해외 승강기산업 시장의 조사·분석과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
 5.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마케팅·홍보·컨설팅 지원
 6.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승강기산업 관련 기술 공동개발
 7. 외국 정부기관과의 정기적 협력회의 개최
 8. 그 밖에 국내 승강기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시범사업)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그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13조(포상 및 시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 및 시장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자금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 지원이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정부는 승강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협회의 설립)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협회의 설립 인가 등)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인가하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협회가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처리한다.

제17조(건의와 자문 등) ① 협회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② 협회는 승강기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부와 민간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로서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1. 승강기산업 기반조성과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정책 건의사항

2. 국내 승강기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발굴

3. 승강기사업자 간의 교류 및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

② 승강기산업발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에 따른 협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정하여 통보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최초 기본계획을 이 법 시행 이후 3년 이내에 수립하고, 최초 기본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대한승강기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승강기 안

전관리법」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승강기협회는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로 본다.